성주군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년 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「지방자치법 」(법률 제8423호 전면개정 2007. 05. 11)의 전면 개정과 「국민건강보험법」(법률 제5854호, 1999.2.8.)의 제정으로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제·개정된 상위법의 내용 및 법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관련한 개정 상위법령 조항을 반영함(안 제1조)

나. 진료비 등 징수와 관련하여 개정 상위법령 조항을 반영 함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지방자치법」제113조 및「국민건강보험법」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다. 기타

1) 개정조례안 : 붙임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3) 입법예고 : 생략(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1항과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와”로 하고, 제2조 제1호중 “「의료보험법」과 의료보험료“를 각각 ”「국민건강보험법」과 건강보험료”로 하며, 동조 제2호 및 제3호의“「의료보험법」과 “의료보험진료수가”를 각각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과 건강보험진료수가”로 하고, 제4조 제1항중 “의료보험수가”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“의료보험”과 “의료보험진료수가”를 각각 “건강보험수가”와 “건강보험” 및 “건강보험진료수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**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1항과**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 및 제10조, 「지역보건법시행령」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1조(목적)**----------**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와**----------. ----------
제2조(진료비등 징수)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.	**제2조(진료비등 징수)** ----------. ----------
1.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**「의료보험법」**에 의하여 고시한 **의료보험료** 수가기준액을 징수한다.	1. ---------- **「국민건강보험법」**에---------- **건강보험료** ----------.
2.**「의료보험법」**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 징수한다.	2.**「국민건강보험법」** ----------. ----------
3. **의료보험진료수가**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 및 예방진료 예방접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치과예방진료비용은 별표1과 같다.	3. **건강보험진료수가** ----------. ----------

현 행	개 정 (안)
제4조(건강진단 및 제증명발급수수료) ①보건소에서 치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 등을 위한 진료 및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**의료보험수가**에 의한 소정의 진료 및 검사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. ②각종 제증명발급수수료는 **[별표2]**와 같다. ③ **(생 략)**	**제4조(건강진단 및 제증명발급수수료)** ①---------- ---------- ------**건강보험수가**---------- ---------- ---. ②----------**별표2** --------. ③ **(현행과 같음)**
제9조(진료비) ①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건기관 **의료보험** 진료수가중 보건진료소 수가 기준에 준한다. ②보건진료소의 운영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기관 **의료보험진료수가** 기준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의회 총회의 의결로써 진료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	**제9조(진료비)**①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**건강보험** --------- ---------- ---. ②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**건강보험진료수가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